

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: 2007. 8. 30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7. 8. 30(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60호)
- 다. 상 정 : 2007. 9. 17(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(수도사업소장 : 장석기)

가. 제안사유

- 법(법률 제8370호, 07. 04. 11)전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내용을 정비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,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(「 」)표시
- 상위법령 기준 적용
 -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조정하여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까지 자문 범위확대(안 제2조제2호)
 -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 선정 신설(안 제2조제3호)
-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회의 개최 변경
 - 위원구성 : 10인 이상 20인 이하 ⇒ 10인 이하(안 제3조제1항)
 - 임 기 : 1년 ⇒ 2년(안 제3조제4항)
 - 정기회의 개최 : 분기 1회 ⇒ 반기 1회(안 제6조제2항)

다. 관계법령

- 「수도법」 제30조(수돗물평가위원회) 제1항 내지 제2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영옥)

- 본 안건은 수도법의 전부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

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,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명 낫표 (「」)를 표시하고
- 상위법령 기준을 적용하며
-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개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은 당초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내로 하고
-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
-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분기1회 개최를 반기1회로 조정하였음

○ 본 안건 검토 결과

- 각종 조례 등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등을 20일 이상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
- 본 안건은 2007. 7. 10일자 입법예고를 실시함에 있어
- 자치법규명을 「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」으로 입법예고 함으로써 의회에 제출된 「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상이하게 입법예고 되어 형식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으나
- 내용적으로는 개정이유, 주요내용 등을 충분히 예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
-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입법예고문 작성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소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형식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사료 되는 바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시 형식적인 경미한 하자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히 예고되어 안건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,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